

대법원 2020. 5. 14 선고 2020다20052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5. 14 선고 2020다20052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1 선고 2019나23403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B 주식회사

판결 선고 2020. 5. 14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1. 선고 2019나23403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

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김재형, 주 심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이동원